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28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897호)	임이자	2024. 6.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029호)	정부	2024. 7.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4. 9. 12.)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 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 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 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 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 2조제3항 및 제4항).

-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제9호·제21호·제25호 및 제12조제1항).
-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항·제10항 및 제17조).
-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 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외한다)는"을 "제외한다)·상수도조합은"으로,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상수도조합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 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 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

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 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자에"를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을 "광역상수도 및"으로,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

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인"을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도사업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 ② (생 략)	제2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③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u>제</u>	제외한다)
<u>외한다)는</u> 관할 구역의 주민에	<u>· 상수도조합은</u>
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u>하며,</u> 도지사는 관	<u>한다</u> .
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	
<u>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u>	
한다.	
<u><신 설></u>	<u>④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u>
	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
	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u>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u>
	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u>한다.</u>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7. (생략)
- 8. "지방상수도"란 <u>지방자치단</u> <u>체가</u>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 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 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 한다.
-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
 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
 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
 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
 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
 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
 다.

10. ~ 20. (생 략) <신 설>

	·
1.	~ 7. (현행과 같음)
8.	<u>지방자치</u>
	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9.	<u>지방자치</u>
	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 ~ 20. (현행과 같음)
<u>21</u>	.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21. ~ 23. (생 략)

<신 설>

<u>24.</u> ~ <u>33.</u> (생 략)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
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u>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u>
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u>22.</u> ~ <u>24.</u> (현행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
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u>26.</u> ∼ <u>35.</u> (현행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와 같음)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 ② ~ ⑤ (생 략)
-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 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 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 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가 수도정비계 획을 수립한다.
- ⑦ ~ ⑨ (생 략) <u><신 설></u>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저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

<u>다만, 제5조의2에 따라</u>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상수도조합이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
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 및 제9항을 적용한다.
∥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사업자	또는	상수도점	<u> </u>
<u>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 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다.

- 1.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 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

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 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
 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및 경영현황
-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 <u>과</u>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 2. (생략)
-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u>지방자치단체가</u> 설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
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1. 광역상수도 및
저]

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 또는

4. · 5. (생략)

② ~ ⑤ (생 략)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 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 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 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01441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
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u>.</u>
<u>있으며, 수도사업</u>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
<u>한 같다</u>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7
 -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략)
 - ⑤ ~ ⑨ (생 략)
-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 ③ ~ ⑦ (생 략)
-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 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 1. ~ 3. (생략)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 ③ (현행과 같음)	
4	
,	
1. 피성년후견인	
2 ~ 5 (현행과 간음)	

- ⑤ ~ ⑨ (현행과 같음) 리사) ① (현행과 같음)
 - (<u>2</u>) -----

 - 1. 피성년후견인
 - 2. ~ 5.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
 - ----수도사업자인 특별시·광 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 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상수도조합에 수돗 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

<u>장</u>	• 군수는	수	돗물평	경가위원	회
의	운영계획	을	매년	수립하	여
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
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로 정한다.

③ <u>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든</u> 기관의 장은 위원회	
	_ _
	_
 ④위원회의	_
 	_